



전과 운영 규정

규정번호	2-4-30
제정일자	2021. 10. 1.
개정일자	2024.8.19.
책임부서/팀·계	교무처

제1조(전과목적) 전공(과)에 대한 이해부족 및 부적응으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전공(과)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전과의 심사기준) 전과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23. 2. 23. 삭제>
2. 전출학과 교수 의견서(특별전과인 경우 예외) <2024.2.22. 개정>
3. 전입학과 학과장 면접심사/전입학과 면접심사(학과장 외 전임교원 1인 구성)
4. 전입학과 면접심사 기준은 「별지1」과 같다.

제3조(학점인정 기준)

① 교양학점과 전공학점을 동일하게 전입학과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전입학과 전공교과를 2년제는 50학점 이상, 3년제는 8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19학년도 입학생 전과 합격자부터 전입학과 전공교과를 2년제는 46학점 이상, 3년제는 7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024학년도 입학생 전과 합격자부터는 전입학과 전공교과를 2년제는 40학점 이상, 3년제는 6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2023.6.21., 2024.2.22. 개정>

② 다음의 학과로 전과 시 전입한 학과 자격증 및 공동학위 관련 필수이수 교과목은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미취득시 졸업유보 될 수 있다. <2024.2.22. 개정>

학과명	관련 자격증	공동학위	등록금	비고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사 2급	-	-	-
아동보육과	보육교사 2급	-	-	-

③ 졸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출학과에서 미 취득한 전공필수 교과목은 자동 삭제된다.

<2022.3.10. 개정>

제4조(전과처리절차)

①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과원서를 작성하여 전출학과 학과장 면담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23.3.30., 2024.2.22., 2024.3.20.>

② 교무처에서는 전과원서 및 전과동의서 및 학점인정서를 전입학과에 배부한다. <개정 2023. 3. 30., 2024.3.20.>

③ 전입학과에서는 기한 내에 전과신청자에 대한 별도의 심사를 거쳐 전입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전과동의서 및 학점인정서, 전과심사평가 및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23.3.30., 2024.2.22., 2024.3.20.>

④ 교무처에서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전과 처리한다. <개정 2023. 3. 30., 2024.3.20.>

제5조(통폐합 또는 모집단위 폐지로 인한 특별전과)

① 학과 구조조정으로 통폐합 또는 폐과 소속 재직생은 학칙[부칙]에 의거 모집단위가 폐지된 시점부터 학생이 희망할 시 전과를 할 수 있다. 다만, 재직생에 대해서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시점

기준으로 재학연한 이후 발생한 재입학생은 소속변경 후 재입학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② 전과는 지정된 전과 가능학과[별표1]에 한해 가능하며, 전입학 학과의 면접을 통한 최종 결정에 의거 전과를 허가한다.

③ 학과통합 및 폐과로 인하여 학과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에서 기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하나 미 취득 교과목은 성적을 삭제한다. 단, 모집단위가 폐지되어 전과한 경우는 총 졸업 학점만 충족되면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23.06.21., 2023.09.06.›

④ 학과통합 및 모집단위 폐지로 인하여 학과 소속 변경 시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단, 졸업증서에 학과 표기는 각 전공의 취득학점 수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수한 학점이 더 많은 전공으로 표기한다. 단, 취득한 전공학점이 동일할 시 학생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로 지정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⑤ 졸업유보 및 졸업유보 예정자는 전입학과 전공과목 중 최소 1과목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정 2023.09.0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별표1」은 2023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의 제2조(전과의 심사기준), 제3조(학점인정기준), 제4조(전과처리절차), 전과심사평가 및 심사결과표, [별지2]는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모집단위 폐지학과	전과 가능학과
환경 과학과	
전자정보통신과	
스마트기계디자인과 (기계설계과)	
스마트토목디자인과 (건설정보시스템과)	
사무비서행정과	전체 학과<2023.6.21., 2023.12.7. 개정>
관광항공서비스과 (국제관광경영과)	
마케팅비즈니스과 (국제경영과)	
세무회계과	
실내디자인과(3년제) <2023. 6. 21. 개정>	
자동화시스템전공 <2023. 6. 21. 개정>	
기계공학전공 <2023. 6. 21. 개정>	
시각디자인과 <2023. 6. 21. 개정>	
실용무용과 <2023. 6. 21. 개정>	
연예매니지먼트과 <2023. 6. 21. 개정>	
해어디자인전공<신설 2024.8.19.>	
메이크업전공<신설 2024.8.19.>	
토탈뷰티전공<신설 2024.8.19.>	

※ 단, 모집단위 폐지학과로의 전과는 동일학년 재학생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2023.12.7. 개정>

※ 학칙시행세칙 제6조의2(전과) ⑦ 2년제 학과에서 3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나 3년제 학과에서 2년제 학과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는다. <2023. 6. 21. 개정>

※ 인문사회계열: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과 ※

학칙 제19조(전과) ① --- 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보육과의 경우에는 1학년 2학기 전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⑥사회복지학과와 아동보육과로 전입 한 자는 1학년 1학기 교과목부터 수강하여야 한다.
<2023. 6. 21. 개정>

「별지1」

전과 심사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점수범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공적성 평가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25	20	15	10	0
	전공에 대한 수학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25	20	15	10	0
	전과에 대한 동기가 확실하고 전공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가?	25	20	15	10	0
인성 평가	인성, 용모, 자세, 면접 태도	25	20	15	10	0
합 계						

면접 시 유의사항

1. 선정된 기준점수자를 기준으로 5단 평가.
2. 면접관의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하의 경우 불합격 처리함.
3. 평가점수가 같을 필요는 없으나 매우 극심한 차이를 보일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재심요망.
4. 면접은 학과장 외 전임교원 최소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심의함을 원칙으로 함.

[별지2]

전 과 원 서

경 제	당 당	팀 장	처 장	총 장

성 명	학 년	학 번	학 번	생년월일					
현 주 소				자 택					
학업성적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총 계				
	취득학점	평점평균	취득학점	평점평균	취득학점				
전과사항	전출학과			전입학과					
전과사유									
전출학과 학 과 장 의 견									
	학 과 장 (서명)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출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F학점 제외)되나, 전입학과에서 소정의 전공교과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입학과 해당 학년도/학기에 개설된 전공필수는 꼭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입학과 전공과목 학점부족으로 졸업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 아동보육과로 전과 시 자격증 관련 교과목 이수는 꼭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 특별전과인 경우는 [전과사유]만 작성합니다. <p>위 본인과 보호자는 유의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학생 자필 작성)</p> <p>본 인: (서명/인) 보호자: (서명/인)</p>								
<p>상기 본인은 학칙 제19조 및 학칙시행세칙 제6조의 2에 의거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u>학년 학기</u>로 전과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24. 1. 1.</p> <p>본 인: (서명/인) 보호자: (서명/인)</p>									
<p>신안산대학교 총장 귀하</p>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width: 50px;"> <tr> <td style="padding: 5px;">경 제</td> <td style="padding: 5px;">학생처</td> </tr> <tr> <td style="padding: 5px;">유</td> <td style="padding: 5px;"></td> </tr> </table>	경 제	학생처	유	
경 제	학생처								
유									

- 첨부 : 1. 전과동의서 및 학점인정서 1부
 2. 학업성적표 1부
 3. 전과실사평가표 및 실사결과표 1부.

전과동의서 및 학점인정서

* 폐과 및 전공변경으로 인한 전과는 학점인정서 작성하지 않음. -> 기이수학점 인정신청서로 대체

전과심사평가 및 심사결과표

학번	성명	전출학과	전입학과	전과 학년-학기	전출학과 총 평점평균
ex)2102222	홍길동	기계과	호텔조리과	1-2	3.5

※ 각 신청 학생의 심사 내역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분야	순 번	평가항목	평가점수범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공적성평가	1	전공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25	20	15	10	0
	2	전공에 대한 수학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25	20	15	10	0
	3	전과에 대한 동기가 확실하고 전공학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가?	25	20	15	10	0
인성평가	1	인성, 용모, 자세, 면접 태도	25	20	15	10	0
심사결과					ex) 합격 / 불합격		

20 년 월 일

0000과

평 가 자: (서명)

전과심사결과

순번	학번	성명	전출학과	전과 학년-학기	전출학과 총 평점평균	평가결과 점수(평균)	면접 결과	면접일
1							불합격	
2							합격	
3								
4								
5								

20 년 월 일

0000과

학 과 장: (인)

평 가 자: (인)

평 가 자: (인)